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직후보자 등 사생활에 관한 비공개 인사청문회 실시〉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61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문금주 · 이훈기 · 권향엽 · 김 윤 · 조인철 · 박용갑
황정아 · 이병진 · 김남근 · 장종태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5. 12 5.

3. 회 부 일 : 2025. 12. 8.

※ 의안번호 : 1496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선출안 등 임명요청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역량, 자질 등을 검증하여 후보자가 임명 요청된 공직에 적합한 인원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나 인사청문의 대상의 역량과 자질에 관한 검증 기준이 부재하고, 최근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과 관련된 역량이나 자질보다는 공직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폭로와 인신공격으로 인해 인사청문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공직역량과 공직자질에 관한 인사청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직후

보자 또는 공직후보자의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관해서는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공직후보자 역량 및 자질 검증을 강화하고, 공직후보자 및 그 친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위원회가 공직역량 및 공직자질을 포함하여 인사청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직후보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실시하고 그 결과는 적격의 가부를 공개하도록 하며,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② (생략) <u><신설></u>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위원회는 제1항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인사청문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u> <u>1. 공직역량: 공직후보자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역량과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u> <u>2. 공직자질: 공직후보자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 및 결격 사유에 관한 사항</u>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생략) <u><신설></u>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u>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제18조(주의의무) ①·② (생략) <u><신설></u>	<u>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실시한다.</u> <u>③ 제2항의 비공개 요청은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위원회에 비공개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u> <u>④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인사청문회의 결과에 관하여 위원회는 인사청문 결과 적격의 가부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인사청문 결과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u> 제18조(주의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함으로써 공직후보자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과정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개인신상에 관한 과도한 의혹 제기와 도덕성 검증에 집중하여, 공직후보자의 국정 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직후보자나 그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직후보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시키는 범위에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때 공직역량과 공직자질을 포함하여 인사청문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인사청문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 제14조제2항은 공직후보자가 본인 또는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1)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국회의 공개의 원칙(헌법 제50조제1항2))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규정에 따르면 위원회가 공직후보자의 요청에 대한 타당성·적절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사청문

-
- 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①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대한민국헌법」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으로 인해 공직후보자나 그 친족의 사생활을 부당 혹은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더라도 공직후보자가 요청하면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실시하여야 함.

특히,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민법」 제777조³⁾에 따른 친족, 즉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에 친·인척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도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후보자 본인 외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인사청문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상당히 넓어지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공직후보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 보장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 및 공직후보자 검증의 투명성 등 공익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안번호 제1673호, 제11410호, 제12494호, 제12550호 및 제12981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문 의 처
02)6788-5015